

의정부소방서 공고 제2024-9호

2025년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채용 공고

의정부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6.

의정부소방서장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인원	분 야	업무 내용	비 고
의정부소방서 (119안전센터)	3명	구급업무	구급출동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별 제한 없음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 주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한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간호사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4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III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동순위자 발생 시 대체인력 경력자, 고령자 순으로 결정

-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②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④ 대체인력(구급대원)으로서의 적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모집공고	2024. 12. 6.(금) ~ 2024. 12. 13.(금)	• 홈페이지(의정부소방서) •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접수기간	2024. 12. 11.(수) 09:00 ~ 2024. 12. 13.(금) 18:00	• 접수방법 :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24. 12. 17.(화) 합격자 발표 16:00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4. 12. 19.(목) 14:00	• 장소 : 의정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23.(월) 14:00	•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등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2024. 12. 24.(화) ~ 2024. 12. 27.(금)	•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IV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역

제출 서류		비 고
공 통	1. 응시원서 <별지 1호> ⇨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접수시스템 업로드 2. 이력서 ⇨ 접수시스템에 기본정보, 학력, 자격, 경력 등 입력 철저 3. 자기소개서 ⇨ 접수시스템에 입력 4.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접수시스템에서 동의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 접수시스템에서 동의 6.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1부 ⇨ 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원서접수 前 일 기준 자격증(면허)이 발급된 상태여야 함(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7.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접수시스템 마이데이터 연동) 8.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한함) ※ 접수시스템에 업로드	
해당자	9. 구급업무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접수시스템에 업로드 10. 구급업무 관련 각종 자격증 1부 ⇨ 접수시스템에 업로드	
최종 합격자	11. 야간근무자 배치 전 건강검진결과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V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 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 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 순위자에게 조기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유지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무형태 : 주 52시간 내 4조 2교대 *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 가능
근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부소방서 관내 119안전센터
보수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월) : 약 280 ~ 350만원 내외 ※ 임금지급 기준 : 12,152원(시간급) - '25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기간별 차등 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VI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 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최종순위명부에 따라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근 소방관서 추가채용 공고 시 별도 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반환할 경우 해당없으며, 채용 관련 안내사항으로만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031-849-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응시원서

본인은 2025년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00월 00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경기도 의정부소방서장 귀하



응시표

2025년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구급보조인력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구급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은 의정부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280-8636) 또는 이메일 (han0209@g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7월 2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의 정 부 소 방 서

[별지 3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소방서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